

## 정보화관련 '98 규제정비 내용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과 신설규제의 강력억제를 목표로 「'98 규제정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 . .

서 병 조 / 정보통신부 정보화제도과장

### 추진배경 및 실적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과 신설규제의 강력억제를 목표로 「'98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처별 정비계획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별로 심사하여 금년 중 총규제의 50%이상 정비달성을 목표로 규제정비를 추진중이다.

정보통신부에서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화기획실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상의 규제를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정보화기획실에서 발굴한 규제사무수는 총 34개이며 이중에서 26개의 규제를 금년중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98년말까지 관련법령의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주요 정비내용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자 승인제도 폐지(정보화촉진기본법 제29조등)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시 연구개발비 출연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시내전화부문 경쟁도입과 최근 IMF 경제위기로 업계의 투자재원 마련이 어렵고, 시내전화사업자와의 중복투자 등 예상되는 문제가 많아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자 승인제도를 폐지하려고 한다.

동제도의 폐지로 인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하나로 통신 등 시내전화사업자의 경쟁력이 강화되며 기업의 참여기회가 개방될 것이다. 또한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자망을 이용한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개발·제공 될 것이다.

전산망사업참여제한제도폐지(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  
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등)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산망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망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산망개발보급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의 경쟁도입 및 정보화진전에 따라 전산망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S/W 개발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보편화 되었으므로 전산망사업참여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에 의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참여강제규정과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전산망사업 참여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사업규모와 능력에 따른 다양한 사업참여로 업체간 경쟁력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전자문서 위작·변작자에 대한 제재수단 합리화(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제2항 등)

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하거나 위작·변작된 전자문서의 이용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폐지하고, 전자문서 보관의무를 위반하거나 전자문서 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산망관리자에 대한 벌칙규정(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완화하여 단순 보관 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각종 제재수단의 합리화를 위해 형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법적용의 중복방지 및 일관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형벌법규의

과잉현상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사회생활의 제약을 완화하면서도 소기의 행정목적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진흥협회 운영규제완화(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  
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등)

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정관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분담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임원의 임면,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사업자단체의 규제개혁지침을 마련하여 사업자단체의 설립조건을 완화하고 사업자단체의 운영, 활동에 대한 통제를 완화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침에 따라 협회와 관련된 운영관련 규제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로인해 협회운영의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규제정비는 금년 내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2002년까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매년 새로운 기준으로 정비할 규제를 발굴해 나갈 것이다. 규제총량제, 규제일몰제 등을 기반으로 신설·강화규제의 억제와 기존규제의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보화기획실에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한 전자서명법 등 새로 제정되는 법령의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신설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